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2001. 2. 23. 개정 2004. 11. 24.
개정 2007. 6. 26. 개정 2012. 2. 29.
개정 2013. 3. 1. 개정 2013. 5. 31.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4. 29.
개정 2015. 2. 3. 개정 2017. 8. 22.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에 관한 교원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6.)

제2조(교원업적의 구분) “교원업적”이란 교육영역(강의, 학생지도 등), 연구영역(연구, 학술활동 등), 산학협력영역(기술지도, 경영자문 등), 봉사영역(교내·교외 봉사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개정 2007. 6. 22.)

제2장 평가기구

제3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과 부교수 이상으로서 각 단과대학 평가위원회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7. 6. 22.)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평가의 기본원칙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2. 업적평가 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업적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개별 교원의 업적평가
6. 업적우수교원의 선정
7. 업적평가결과의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4조(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위원회) ① 단과대학 교원업적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이하 “단과대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과대학 위원회는 학장, 학부(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 단과대학 위원회는 개별 교원의 업적자료를 확인·심의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와 단과대학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 및 단과대학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

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기간 및 시기) 교원의 업적평가는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2. 29.)

제7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매년 2월말까지 소정양식의 업적평가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03. 01)

② (삭제 2013. 03. 01)

③ 총장은 학장이 제출한 평가조서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결과를 4월 말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3. 03. 01)

제8조(재심청구)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03. 01)

② 총장은 이의사항을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03. 01)

③ 재심을 요청한 교원에게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 03. 01)

제4장 평가내용

제9조(평가내용) ① 교원업적은 연구(실기), 산학협력, 교육, 봉사 4개 등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1 ~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13. 03. 01)

② 교육영역의 평가 항목은 강의(실험실습 포함), 학사행정 및 학생지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연구영역의 평가 항목은 논문, 저서, 학술회의 발표, 수상, 간접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타 연구영역의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29)

④ 산학협력영역의 평가항목은 산업교육·자문, 산업재산권, 기술지도, 산학협력에 의한 간접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6. 22.)

⑤ 봉사영역의 업적 평가 항목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평생교육 및 기술지도, 봉사관련 수상,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6. 22.)

⑥ 평가 시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 교육, 산학협력 실적은 다음 평가 시 해당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업적을 인사·성과급지급 등 이미 결정된 사항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2. 2. 29. 개정 2015. 2. 3)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저서실적은 인정기준이 충족되는 연도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03. 01)

제10조(종합평가점수산출) ① 교원은 다음 평가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소속되어야 하며, 각각의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신설 2013.03.01.) (개정 2013.5.31., 2014.02.11., 2014. 4. 29, 2017. 8. 22.)

<산학협력사업 참여학과>

(단 위 : %)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계
일반형	40	40	10	10	100
교육형	50	35	5	10	100
연구형	35	50	5	10	100
산학협력교육형	35	30	5	30	100
산학협력연구형	30	35	5	30	100
산학협력중점교수	15	15	-	70	100

<산학협력사업 미참여 사범대학 학과>

(단 위 : %)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계
일반형	45	45	7	3	100
교육형	55	40	3	2	100
연구형	40	55	3	2	100

② 교원이 각 평가영역에서 얻은 득점에 제10조의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 4. 29)

제11조(영역별 평가점수의 산출) ①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및 산학협력영역 각각에서 원점수 인정에 500점의 상한을 둔다. (연구영역은 원점수 표준화 점수임)

② 상한을 초과하는 원점수에 대해서는 부분점수를 인정한다.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에서는 상한 점수를 초과하는 원점수의 20%를 인정하고 상한점수 500점에 가산한다. 산학협력영역과 봉사영역에서는 상한 점수를 초과하는 원점수의 10%를 인정하고 상한점수에 가산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영역의 상한 점수를 초과하는 원점수에 대해 20%를 인정하고 상한점수에 가산한다.

③ 연구업적 점수는 교수 개인별 연구업적 원점수를 평가직전년도 2개년 간의 정보공시 기준 그 교수가 속한 학문분야별 17개 국립 종합대(별표1)의 연평균 논문 편수(국내학술지+국제학술지×2)로 나누어 표준화한다. 표준화시 적용되는 학문분야의 소속은 교원성과급연봉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예·체능계열은 원점수를 표준화하지 않는다.(개정 2015. 2. 3)

④ 연구업적의 표준화는 $\frac{\text{연구업적 원점수}}{\text{전공분야별 국립대 평균논문편수}} \times \frac{\text{표준화 이전 순천대 연구업적 평균점수}}{\text{표준화 이후 순천대 연구업적 평균점수}}$ 의 산식을 따른다. 표준화 산식에서 표준화 이전 및 표준화 이후 순천대 연구업적 평균점수는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얻어진 평균점수를 산식에 적용한다.

⑤ 모든 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 신설 2014. 4. 29)

제12조(성과급지급을 위한 평가의 예외인정) 평가 예외의 범위와 적용방법은 순천대학교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5. 2. 3)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총장은 교원업적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2. 성과급 지급
3. 연구보조비 지급, 교내연구비 지원, 해외파견교수 선정, 우수교원 선정
4. 성과연봉 지급 (신설 2012. 2. 29.)

제5장 기 타

제14조(평가업무 관리) 교원의 업적평가 업무는 교무처가 주관한다.

제15조(비밀유지) 업적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행지침) (삭제2013.03.01)

부 칙(2001.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업적평가는 2005. 9. 1.자로 시행하며 그 평가대상기간은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로 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평가기간 및 시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이후 업적평가는 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며, 2011년 업적평가는 2010.9.1부터 2011.8.31까지로, 2012년 업적평가는 2011.3.1부터 2012.2.29.까지로 한다.

부 칙(2013. 3. 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13. 5. 31)

이 규정은 2014년 업적평가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1.)

이 규정은 2015년 업적평가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9.)

이 규정은 2015년 업적평가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3.)

이 규정은 2015년 업적평가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별표4 중 “교양기초교육원”을 ‘교양융합대학’으로 한다.

⑩ 생략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생략>

부 칙<2019. 3. 25.>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산학협력실적 인정범위 및 점수) 내용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별표 1] (신설 2013.03.01.)(개정 2014.04.29. 2015. 2. 3, 2017. 8. 22.)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평가 항목	구 분	세부구분	점수 (단독 기준)			비고
			신규 채용	승진, 재임용 (계약), 정년 보장,	업적 평가	
논문	학위논문	박사	-	-	300	
		석사	-	-	150	
	1국제저명 학술지	세계 3대 저명 저널 (Science, Nature, Cell) SSCI, A&HCI, SCIE, SCI (상위 α%)	1000	1000	1000	
		2SCOPUS 등재	150	150	150	
		3기타 국제학술지	-	130	130	
		4등재(후보) 학술지	100	100	100	
	기타학술지	해외발행 Full Paper	-	50	50	
		국내발행 Full Paper	-	35	35	
	5학술회의	국제규모	-	-	30	
		전국규모	-	-	15	
		기타	-	-	10	
	6저서	7전문학술저서	500부 이상	-	200	
300부 이상 ~ 500부 미만			150		150	
100부 이상 ~ 300부 미만			100		100	
7전문학술 번역서		500부 이상	-	100	100	
		300부 이상 ~ 500부 미만		75	75	
		100부 이상 ~ 300부 미만		50	50	
8중고교 교과용 도서		5,000 이상	-	75	75	
		2,500부 이상 ~ 5,000부 미만		50	50	
		1,000부 ~ 2,500부 미만		25	25	
9일반도서		2,000부 이상	-	35	35	
		1,000부 이상 ~ 2,000부 미만		25	25	
		500부 이상 ~ 1,000부 미만		15	15	

1. 상위 α%는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제공하는 분야의 평균값
2. SCOPUS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인정기준을 따른다.

3. 해외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교원업적물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학술지
 4.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5. ① 학술회의에 발표된 Proceeding 형태의 논문 또는 요약문
 - ② 국제규모 : 개최지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자가 3개국 이상으로, 학회 또는 학술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회의(학술단체란 학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함)
 - ③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교원업적물심사위원회에서 실적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6. ISBN번호를 부여받고 교원업적물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도서(전자책 및 저·역서 발간 경비를 외부기관<용역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포함)에 한함. 다만, 편저는 50%, 개정판은 30%만 인정
 7. 전문학술 저서 및 번역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타 대학교 관련 학과 강의에서 주교재로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거나 외부학술기관의 지원으로 출판된 저서임을 증명하면 최고점 부여
 8. 단,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교원 업적물심사위원회에서 실적 인정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교원업적물심사위원회에서 실적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 공동연구실적물(논문 및 저서)의 인정비율

- 제1저자(또는 대표저자) 및 교신저자 : 2인공동 = 단독의 80%, 3인공동 = 단독의 70%, 4인이상 = 단독의 60%
- 공동저자 : 2인공동 = 단독의 70%, 3인공동 = 단독의 50%, 4인공동 = 단독의 30%, 5인이상 = 단독의 20%
- 공동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 2인공동 = 단독의 80%, 3인공동 = 단독의 60%, 4인공동 = 단독의 45%, 5인 이상 = 단독의 40%

※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연구업적 표준화산식에서 전공분야별 국립대 평균 논문편수(2개년)의 부분을 교수별 종전 소속학과 학문분야의 평균을 합산하여 다시 분야수로 나눈 평균을 학과 평균으로 함

※ 17개 표준화 국립종합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부경대, 창원대, 순천대

※ 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대학을 제외한 다음의 국립종합대를 표준화 대상으로 함
경상대, 창원대, 군산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목포대, 공주대, 부경대, 순천대

[별표 2] (신설 2013.03.01. 개정 2015. 2. 3)

실기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만화 사진 영상 문창 패션 피아노	전시		개인전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또는 국·공립, 4년제 대학 소재 전문전시장	100	증빙 자료 (개인전, 2인전) 1. 전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 또는 도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및 전시작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장 외관과 입구, 전시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장 4면을 기록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전) 전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 또는 도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전	시 소재 전문전시장		
			2인전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또는 국·공립, 4년제 대학 소재 전문전시장	60	
			2인전	시 소재 전문전시장	30	
			3인 이상 단체전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또는 국·공립, 4년제 대학 소재 전문전시장		
			3인 이상 단체전	전국 소재 전문전시장	15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만화 사진 영상 문창 패션 피아노	연극·영화·방송물		감독·연출	(연극,영화)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 소재지 또는 국·공립, 4년제 대학 소재 전문상영관 및 전문공연장 (방송물) 공중파, 케이블 방송에 한함.	100	증빙 자료 (연극) 공연 실황을 녹화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방송물) 1. 영화·방송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영관, 공중파, 케이블에 상영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감독·조연출		60	
			기술·무대·음악감독		30	
			그 외 공동 참여	15		
	공연·상영	연주	Full Program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또는 국·공립, 4년제 대학 소재 150석 이상의 전문공연장	100	증빙 자료 1. 공연 프로그램 리플릿과 공연 실황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50석 이상 전문공연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 사항 최근 3년간 연주발표하지 않은 곡에 한한다. <Full Program> 평가 대상자가 공연을 주관하고 연주과정에 참여한 연주회로서 본인의 연주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Half Program> 평가 대상자의 연주시간이 30분 이상인 연주회로서 Full Program의 반주, 또는 전 악장 협연인 경우를 말한다.
			Half Program		60	
			10분 이상		30	
			5분 이상	15		
			150석 이상의 전문공연장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만화 사진 영상 문창 패션 피아노	출간	문학 작품	운문	동일지 면 4편 이상	편집(기획)위원진을 갖춘 국외 및 국내 서울, 경 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소재 출판사에서 출간되 는 ISSN이 있는 문예지 에 한한다.	100	증빙 자료 원본, 또는 표지·판권 · 차례·해당 쪽을 포 함하는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동일지면”이란 동일 문예지의 같은 호에 발 표된 것을 말한다.
			산문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			
			운문	동일지 면 2편 이상		50	
			산문	200자 원고지 30매 이상			
			운문	동일지 면 1편		20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15	
		매체 연재	동일 일간지 70회 또는 동일 매체 70쪽 이상 연재물	국외 및 국내 서울, 경 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에서 발행된 한국기자협 회에 가입한 일간지 또는 ISSN이 있는 정기 간행 물에 한한다.	100		
			동일 주간지 30회 또는 동일 매체 30쪽 이상 연재물		50		
			동일 월간지 10회 또는 동일 매체 10쪽 이상 연재물		30		
			기타매체 10회 또 는 10쪽 이상 연 재물		15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만화 사진 영상 문창 패션 피아노	문학 작품 집	문학 작품 집	단독 문학작품집 (180쪽 이상, 동/시집은 90쪽 이상, 500부 이상)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소재 출판사에서 간행된 ISBN이 있는 출판물.	100	증빙 자료 모든 실적물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 사항 음반은 최근 3년간 연주발표하지 않은 곡에 한한다.
			단독 또는 공동 문학작품집 (본인 발표 80쪽 이상, 동/시집은 40쪽 이상, 500부 이상)		60	
			단독 또는 공동 문학작품집 (본인 발표 30쪽 이상, 동/시집은 15쪽 이상, 500부 이상)		30	
			공동문학작품집 (본인 발표 15쪽 이상, 500부 이상)		15	
		미술 작품 집	미술작품집 (90쪽 이상, 500부 이상)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소재 출판사에서 간행된 ISBN이 있는 출판물.	100	
			미술작품집 (60쪽 이상, 500부 이상)		60	
			미술작품집 (30쪽 이상, 500부 이상)		30	
			미술작품집 (30쪽 이상, 250부 이상)		15	
	음반, 영상 집	단독 음반, 영상집 (러닝타임 45분 이상, 500부 이상)	국외 및 국내 서울, 경기, 광역시, 도청소재지 소재 제작사에서 간행된 ISBN이 있는 출판물.	100		
		단독 또는 공동 음반, 영상집 (본인 발표 러닝타임 30분 이상, 500부 이상)		60		
		단독 또는 공동 음반, 영상집 (본인 발표 러닝타임 15분 이상, 500부 이상)		30		
		단독 또는 공동 음반, 영상집 (본인 발표 러닝타임 5분 이상, 500부 이상)		15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건축 계획 및 설계	공모 전 입상	국제 규모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프리츠커건축상, 칼스버그건축상, 美 USITT건축상, AIA건축상, PA Award, AR+D Award	150	국제설계공모나 국내설계공모를 주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관, 공인된 단체 등이 발행한 수상 확인서 또는 상장 사본을 제출 (단, 수상자가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대표명의로만 게재된 경우, 해당 대표가 발행한 공동설계확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동수상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이상 50% (설계업체 제외)
			공인된 국제설계경기의 당선 및 입상작품		150	
		국내 전국 규모	광역시, 도, 공기업, 지방공사, 전국규모의 해당 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상, 한국건축가협회상, 김수근 문화상 건축상	100	
			국내 설계경기의 입상 작품		100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건축 계획 및 설계	전문 지 발표	국제 적수 준	해외 해당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DESIGN nice, A+U, JA, Architectural Record, Progressive Architecture, CASA BRUTUS, PROCESS:Architecture, SHINKENCHIKU, GA(Global Architecture) DETAIL, Archdaily,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s Journal, 신건축(일본), 건축문화(일본), PRAXIS, WA, THE PLAN, Domus, VM SPACE, SPACE(한국)	150	해당 전문지를 제출(단, 접수담당자가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저자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설계업체 제외)
		국내 전국 규모	전국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A&C, PA, Poar, CONCEPT, 건축문화, 건축사, 건축가, 이상건축, 건축세계, 플러스, 건축과 환경, 건축설계, 건축과 사회, 도시설계, 월간미술, 데코저널, 월간 인테리어, 전원속의 내집, Artnow, FRAME, 퍼블릭아트, 아트인컬처, MARU, 인테르니앤데코	100	

학과	발표 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건축 계획 및 설계	전시 발표	전국 규모	미발표작 (1점 당)	학회, 협회 주관 공인전 시회 (기획전, 초대전, 대한민 국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대한건축학회 교수설계 작품전 등)	100	① 해당 전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첨부해야 함. ② 발표 도록, 전시풍경 사진, 동영상 녹화 파 일 중의 하나를 증거물 로 제출해야 함 ③ 1년에 150점 초과 불과 *공동실적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설계업 체 제외)
		지역 규모	미발표작 (1점 당)	지자체 또는 공인기관 주 관(기획전, 초대전 포함)	50	
		기타	미발표작 (1점 당)	개인전 및 단체전	30	
건축 계획 및 설계	계획 및 완공 발표	건축설계, 인테리 어, 환경조형물, 도시설계	대규모(3층 이상 또는 연 면적 330㎡ 이상) 1건	① 국제 건축학교육인증 심사항목인 건축 설계 지도교수 실기실적 증 명과 관련된 내용임. ② 계획도면, 디자인보 고서 또는 패널, 완공 건축물일 경우 엔 완공 사진 추가 ③ 건축사 3인(공동설계 자 제외)의 우수건축 작품평가서(구체적 평 가내용 명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공동실적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설계업 체 제외)	100	
			소규모(2층 이하 또는 연 면적 330㎡ 미만) 1건		50	
			건축 조형물 및 구조물 1 건		30	*공동설계자의 확인 증 명서 첨부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조경	공모전 입상	국제 규모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AIA건축상, 국제조경가협회(IFLA)상, 미국조경가협회(ASLA)상	150	국제설계공모나 국내설계공모를 주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관, 공인된 단체 등이 발행한 수상확인서 또는 상장 사본을 제출 (단, 수상자가 조경설계사무소 등의 대표명의로만 게재된 경우, 해당 대표가 발행한 공동설계확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동수상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공인된 국제설계경기의 당선 및 입상작품		150	
		국내 전국 규모	광역시, 도, 공기업, 지방공사, 전국규모의 해당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전국규모]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사)한국조경학회, (사)전통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환경조성복원협회	100	
			국내 설계경기의 당선 및 입상작품		100	

학과	발표영역	구분	세부구분	인정범위	점수	비고
조경	전문지 발표	국제적수준	해외 해당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Landscape Architecture(미국), Topos(유럽), JOLA(유럽), Garten Landschaft(독일)Landscape Design(영국)	150	해당 전문지를 제출(단, 접수담당자가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저자인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국내 전국규모	전국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환경과 조경(ELA), 조경시공(LAC), 한국조경사회 기술지(KSLA), Korea Landscape Expo(KSLA작품집), 조경세계, 공간(SPACE), CONCEPT, 건축문화, 건축과환경	100	
조경	전시 발표		개인전(신작 8점 이상 발표) 1회	국내외 공인전시회(기획전, 초대전 포함)	100	①'국·공립대학 전시장 및 시단위 이상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및 단체전' 또는 '학회·협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 전시내용이 전국규모임을 증명할 확인서가 있어야 함. ②발표도록, 전시모습을 담은 사진, 녹화된 동영상 파일 중의 하나를 증거물로 제출해야 함. ③1년에 150점 초과 불가
			2인전(신작 4점 이상 발표) 1회		50	
			추천(초대)작가 이상으로 참여한 국내외 초대전(1점 이상 출품) 1회		50	
			3인 이상 단체전(1점 이상 출품) 1회		30	

1. 교원업적물 심사위원회 실기실적 소위원회에서 실기실적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본인의 실적은 본인이 심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실적물은 이전에 평가받았던 실적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문예술대학 예능계 학과 실적물 중 30점 이하의 실적은 1년에 1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실적물 제출자는 심사를 위해 제출물을 파일화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별표 3] (신설 2013.03.01, 개정 2013.5.31., 2014.04.29., 2017. 8. 22., 2019. 3. 25.)

산학협력실적 인정범위 및 점수

평가항목	세부		단위	점수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업적평가		
산학협력 교육활동	① 현장실습 지도		학점당	-		30		
	② 캡스톤디자인 지도	단일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	학점당	-		20		
		2개 이상의 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	학점당	-		30		
			기업연계로 구성된 팀	학점당	-		40	
	③ 창업교과목 담당		학점당	-		20		
	④ 산학연계형(주문식) 교과목 담당		학점당	-		20		
	⑤ 계약학과	유치/개설	주임교수	건당	-		200	
			참여교수		-		100	
			운영	학점당	-		20	
	⑥ 현장견학 인솔교수		3일 이내 3일 초과	건당	-		20	
	(산업체, 박람회, 취업/창업 캠프, 현장답사 등)				-		40	
	⑦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학기당	-		10		
⑧ 창업동아리 및 발명 동아리 지도교수		학기당	-		50			
⑨ 학부생연구참여기회(UROP) 프로그램 지도교수		학기당	-		50			
⑩ 국책사업 관련 지도활동		건당	-		20			
⑪ 선취업 후진학 학과	유치/개설	주임교수	건당	-		200		
		참여교수		-		100		
		운영	학점당	-		20		
⑫ 학생 취업 연계 및 알선		명당	-		10			
산학협력 연구활동	① 기술이전	기술료 500만원미만		건당	-		20	
		기술료 500~1,000만원미만			-		50	
		기술료 1,000~2,000만원미만			-		100	
		기술료 2,000~5,000만원미만			-		200	
		기술료 5,000만원이상			-		300	
	② 지식재산권	국제특허 등록(UP, JP, EP)		건당	300		300	
		국내특허 등록 및 기타 국제특허 등록			100		100	
		기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		30		30	
			신지식재산권 등록		30		30	
	③ 외부 연구비 수주	국책사업 제외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2억원 이상 수주		건당	250	300	250	300
		1억~2억원 미만 수주		건당	200	250	200	250
		6천만원~1억원 미만 수주		건당	150	200	150	200
		3천만원~6천만원 미만 수주		건당	100	150	100	15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수주		건당	50	100	50	100
		1천만원 미만 수주		건당	30	50	30	50
		※ 산학협력 공동연구비의 경우에는 인문계/예체능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승진, 임용, 정년보장에만 해당)						
	④ 국책사업수행	국책사업 수행 규모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분류			A급	B급	A급	B급
		단장/사업(연구)책임자/센터장		건당	200	100	200	100
		부센터장/부장/간사		건당	100	50	100	50
참여교수/참여연구원		건당	30	20	30	20		
※ A급: 연간사업비 10억 이상/ B급: 연간사업비 10억 미만								
⑤ 학교기업, 교원 창업(실험실 창업 포함)		건당	-		100			
⑥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 유치		건당	-		100			
⑦ 산업체 파견 활동		개월당	-		30			
산학협력 봉사활동	① 기술·경영·디자인 등의 자문 및 지도 (상한 100점)		방문일당	-		5		
	② 산업체·연구소·관공서 방문특강		건당	-		20		
	③ 국제학회 초청강의		건당	20		-		
	④ 국내학회 초청강의		건당	10		-		

평가항목	세부	단위	점수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업적평가	
	⑤ 취업연계산학강좌유치	건당			50
	⑥ 산학협력협의회활동	횟수			50
	⑦ 기업의 공식적인 멘토 활동(R&BD 기획 등)	건당	-		20
	⑧ 과제 수주 또는 사업단 유치를 위한 과제(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건당	-		설명 참조
산학협력 기타활동	현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로 분류		현직	퇴직후 3년 이내	-
	① 국내 10대 대기업 임원급 이상 근무경력(A)	년당	100	80	-
	② 국내 10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 임원급 이상 근무경력(B)	년당	80	60	-
	③ 국내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근무 경력(C)	년당	60	40	-
	※ 퇴직 후 3년 초과 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업체가 아닌 병원, 연구소 및 기타기관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에서 A, B, C로 해당경력을 결정한다.				

1. 산학협력 교육활동

- ① 현장실습 및 실무실습지도 : 교육내용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기관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기제(계절학기 포함) 기간 동안 현장실습 지도교수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최대 180점까지 인정한다.
- ② 캡스톤디자인 지도 : 국책사업 및 민간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지도한 교수에게 부여한다.
- ③ 창업교과목 담당 : 창업교과목을 지도한 교수에게 부여하되, 공동강의 과목으로 운영할 경우 총점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 ④ 산학연계형(주문식)교과목 담당 :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성화 교과목을 학기제(계절학기 포함) 기간 동안 지도한 교수에게 부여하되, 공동강의 과목으로 운영할 경우 총점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 ⑤ 계약학과 유치 및 운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유치 및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주임/참여교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총점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 ⑥ 현장견학 인솔교수 : 산업체, 박람회, 취업/창업 캠프, 현장답사 등의 인솔교수에게 부여하되, 인솔교수가 다수인 경우 배정비율은 총괄인솔자 2/(n+1), 공동인솔자 1/(n+1)로 한다. n은 인솔교수의 총수를 의미한다.
- ⑦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 국책사업단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취업동아리의 지도교수에게 부여하되, 동일 동아리에 대해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총점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한 교수가 2개 이상의 동아리의 지도교수일 경우, 유리한 점수를 받는 1개의 동아리에 대한 점수만을 인정한다.
- ⑧ 창업동아리 및 발명동아리 지도교수 : 국책사업단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창업 또는 발명 동아리의 지도교수에게 부여하되, 동일 동아리에 대해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총점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한 교수가 2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일 경우, 유리한 점수를 받는 1개의 동아리에 대한 점수만을 인정한다.
- ⑨ 학부생연구참여기회(UROP) 프로그램 지도교수 : 국책사업단에서 지원을 받아 지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⑩ 국책사업 관련 지도 활동 : 국책사업과 관련한 학과 내의 모든 지도 활동(경진대회 주관 및 운영, 취업지도기획, 전문가초청강연 주관 등, 국책사업단에서 인정하는 지도활동에 국한)에 대하여 해당 사업단장이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모든 교수에게 각각 인정한다.
- ⑪ 선취업후진학 학과 유치 및 운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유치 및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주임/참여교수가 다수일 경

우에는 총점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 ⑫ 학생과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 실적으로 취업지원 과정 및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된다.

2. 산학협력 연구활동

- ① 기술이전 :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임금액 기준의 정액기술료,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수입금에 한하여 인정하고, 업적 반영 비율은 별도의 지분비율이 없는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

-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1개국 특허만 인정한다.
- 지식재산권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신규채용시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도 인정한다.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업적 반영비율은 발명자 지분비율을 따르며, 명시된 별도의 지분비율이 없는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로 한다.
- 기타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신지식재산권(저작권,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된 기타 지식재산권이여야 하며, 1인당 최대 3건을 인정하며, 신규채용시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타 지식재산권도 인정한다.
- 특허등록 실적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원에게 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외부연구비 수주

- 외부연구비 수주는 정부기관, 단체,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수혜 및 수탁연구 과제를 의미하며, 국책사업 및 대학자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및 연구비 등의 실적은 제외한다. 예술체육계열의 수주 작품은 수탁연구과제로 인정한다.
-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이 경우(신규채용 제외) 산업체와 협력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협력 공동연구비의 경우에는 인문계/예체능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연구비를 대학에서 중앙관리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신규채용시에는 연구비를 대학에서 중앙관리하지 않는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도 인정한다.
- 과제책임자란 세부책임자를 겸하는 총괄책임자와 세부책임자를 의미하며, 각각 독립된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연구인 경우 반영비율은 과제책임자 $2/(n+1)$, 공동연구자 $1/(n+1)$ 로 한다. 단 여기서 n은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연구참여자 수를 의미한다.
- 산업체에서 100% 지원한 연구비의 경우에는 인문계/예체능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연구기간이 평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있을 때 평가년도범위 내에서 월할(n/12)하여 반영한다.

예: 업적점수 = (연간 업적점수) × (평가년도의 협약 개월수/12)

- ④ 국책사업수행 : 국책사업 수행 실적은 연간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은 A급, 10억 미만의 사업은 B급으로 평가한다.

⑤ 학교기업 및 교원창업

- 학교기업설립 실적은 총장이 임명한 사업단장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교원창업 실적은 교원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외에 설립하는 것과 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창업자가 근무 중에 습득한 기술을 이용하여 대학 내의 실험실, 연구실, 창업보육센터 등에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⑥ 대학 내에 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유치 실적은 매건당 인정하되, 참여자 여러명일 경우 총점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⑦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산학협력 봉사활동

- ① 기술·경영·디자인 등의 자문 및 지도 :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산업체 및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산업체와의 기술지도, 기술자문, 경영지도, 경영자문, 디자인 지도, 디자인 자문 계약을 통하여 기술지도(자문)료, 경영지도(자문)료, 또는 디자인지도(자문)료가 입금되거나, 교내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산업체 방문 특강 :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산업체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지는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최대 100점까지 인정한다.
- ③ 국제학회 초청강연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회를 의미한다.
- ④ 국내학회 초청강연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학회를 의미한다.
- ⑤ 취업연계산학강좌유치 : 산학협력단장 또는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취업연계 강좌에 한하여 연간 최대 2건까지 인정한다.
- ⑥ 산학협력 협의회 활동 :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회의 건수로 평가한다. 이때 협의회를 담당하는 교수(간사, 책임교수) 1인만 인정한다. 연간 최대 400점까지 인정한다.
- ⑦ 기업의 공식적인 멘토 활동(R&DB 기획제안서, 연구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단, 외부 공식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단이나 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공식적인 멘토 활동(R&DB 기획제안서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동일 활동에 2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활동으로 보고 각 참여자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점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인정한다.
- ⑧ 과제 수주 또는 사업단 유치를 위한 과제(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외부기관(민간기관 포함)의 공모과제(사업)을 수주(유치)하기 위해 과제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인정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공동연구인 경우 반영비율은 과제책임자 2/(n+1), 공동연구자 1/(n+1)로 한다. 단 여기서 n은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연구참여자 수를 의미한다.

국책과제(사업) 및 민간과제(사업) 포함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업적평가	
		자연계	인문계/예체능계	자연계	인문계/예체능계
과제(사업)비 규모					
2억원 이상	건당	-	-	60	70
1억~2억원 미만	건당	-	-	50	60
6천만원~1억원 미만	건당	-	-	40	50
3천만원~6천만원 미만	건당	-	-	30	4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건당	-	-	20	30
1천만원 미만	건당	-	-	10	20

4. 산학협력 기타활동

- ① 국내 중소기업은 퇴직 당시 매출 100억 이상으로 한다.
- ② 국내 10대 대기업은 퇴직 당시 공시된 기준으로 한다.
- ③ 임원급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으로 한다.

※ 산업체 :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을 말한다.

[별표 4] (신설 2013.03.01.)(개정 2014.04.29. 2015. 2. 3, 2017. 8. 22, 2018. 3. 30.)

교육업적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1. 교육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단위	업적 점수	상한	비고	
교육	1. 강의학점	학부	기본학점 18학점까지	학년	8점/학점	144점/년	* 연 18학점까지 기본학점으로 인정하되, 학기별로는 12학점까지만 기본학점으로 인정 * 책임시수 미달시 학점당 5점씩 감점
			기본학점 초과 (1학점-6학점)	학기	5점/학점		
		대학원		학기	5점/학점		
	2. 수업일수	학부수업으로 4일 이상 편성시 (대학원제외)		학기	10점/학기	24점/학기	
		학부수업으로 3일 이상 편성시 (대학원제외)		학기	8점/학기		
	3. 강좌규모	대단위 강의	150명 초과	학기	8점/과목		
120명 초과			6점/과목				
80명 초과			4점/과목				
4. 강의계획서	기한 내 강의계획서 등록		학기	10점/학기		* 모든 과목 기한내 입력시 만점 부여	
5. 성적입력	기한 내 성적 입력		학기	10점/학기		* 일부과목만 입력시 부분 점수 부여	

1. 강의 학점

- ① 학기당 총 15학점까지 인정
 - ② 학부 교과목
 - 기본학점 (18학점/년)까지 1학점당 8점
 - 기본학점을 초과한 학부 과목은 1학점당 5점.
 - 기본학점은 연 18학점까지 인정하되, 학기별로는 12학점까지만 인정
 - ③ 대학원 교과목은 : 1학점당 5점
 - ④ 책임시수 감면 교수 : 책임시수는 학부 9학점으로 인정, (강의학점 - 책임시수)에 대하여 1학점당 5점 추가 부여하고 최고 6학점까지 인정
 - ⑤ 팀티칭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제외)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누어 점수 부여
 - ⑥ 신설학과의 경우 개설 후 4년간 소속 평가계열의 평균치 적용
2. 수업일수 : 대학원 인세전자공학과는 대학원 수업일수로 한다.

4. 강의계획서

- ① 모든 해당 교과목을 기한내에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10점/학기 부여
- ② 일부 교과목만 기한내에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10 x 입력학점수/담당학점수)점/학기 부여

5. 성적입력

- ① 모든 해당 교과목을 기한내에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10점/학기 부여
- ② 일부 교과목만 기한내에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10 x 입력학점수/담당학점수)점/학기 부여

II. 교육 품질 개선

평가항목	세부		평가 단위	업적점수	상한	비고	
교육 품질개선	1. 강의평가	강의평가 평균점으로 평가		학기	14+(6×본인평가비율)		
	2. 특수 교과목 개발 운영	교양교과목 강의		학기	4점/과목	1과목/학기	
		전공교과목 외국어 강의		학기	4점/과목	1과목/학기	
		특성화 전공트랙 개발			4점/전공트랙		* 최초 개발시 인정
	3. 교수법 개선활동	특성화 교과목 개발 운영		학기	2점/과목	1과목/학기	
		교육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참여		회	1점/회	4회/년	
		교육 및 교수법 관련 발표		회	2점/회		
	4. 강의공개	마이크로티칭 참여		학기	2점/과목		
		외부 강의공개 (KOCW)		학기	8점/과목		* 동일 교과목에 대해 중복 인정하지 않음
		교내 강의공개 (e-learning)		학기	5점/과목	1과목/학기	
	홈페이지 활용 강의		학기	3점/과목	3과목/학기		
	5. 교과목 품질 개선보고서	교과목 지속적 품질개선 보고서 (CQI) 제출		학기	4점/과목	2과목/학기	* 동일 교과목에 대해 중복 인정하지 않음
	6.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학기	4점/과목	2과목/학기	
7. 인증제참여	학문분야별 외부인증제 참여	인증제 최초 도입	인증건	5점/인증		* 학과 교수 전원에게 부여	
		인증제 유지	인증건	2점/년			

1. 강의평가

- ① 전공교과목 평가점수를 대학 전체 전공교과목 평균점으로 나눈 값과 교양교과목 평가점수를 대학 전체 교양교과목 평균점으로 나눈 값을 합한 뒤 학점 가중치를 부여하여 나눈 값을 강의평가 평균점으로 함

*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순천대 평균으로 한다.

2. 특수 교과목 개발 운영

- ① 전공교과목의 외국어 강의 : 교내 외국어 강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받은 영어 등 외국어로 강의한 전공 교과목에 한함
- ② 특성화 전공트랙 개발 :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특성화 전공트랙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초 개발시 개발 담당교수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함
- ③ 특성화 교과목 개발 운영 :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특성화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하며, 기 개설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명칭만 변경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 강의공개

- ① 외부 강의공개 : KOCW에 총 강의시간의 1/2 이상의 강의를 공개해야 하며, 신규 공개시에만 인정
- ② 교내 강의공개 (e-learning) : 교양융합대학 LMS에 총 강의시간의 1/2 이상의 동영상 강의 및 강의 보조자료 탑재
- ③ 홈페이지 활용 강의 : 대학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총 강의시간의 1/2 이상의 강의 보조자료 탑재
- ④ 동일 교과목에 대해서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III. 학생 지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 단위	업적점수	상한	비고	
학생지도	1. 재학생 총원률	편제 정원 대비 재학생 총원률	년	14-20/년		* 학과 교수 전원에게 부여	
	2. 취업지도	졸업생 취업률	년	30-40점/년		* 학과 교수 전원에게 부여	
	3. 진로 및 학업지도	학업/진로/생활 지도 상담	학기	1점/회/인	20회/인/학기		
	4. 대학원 지도	석·박사 배출	석사 배출	년	4점/인		
			박사 배출	년	8점/인		
5. 학생대회 지도	외부 경연대회, 학생대회 수상 학생 지도		년	3점/회/인	6점/년		

1. 재학생 총원율

-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대학에서 공시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재학생 현황/편제정원 (소숫점 첫 자리 반올림)
- 다음 표의 해당 점수를 학과(전공) 소속 교원 전원에게 부여

재학생 비율	업적점수 (년)
90% 이상	20
80% 이상 ~ 90% 미만	18.5
70% 이상 ~ 80% 미만	17
60% 이상 ~ 70% 미만	15.5
60% 미만	14

- 교직과는 사범대학의 평균을 따르고, 대학원 인채전자공학과는 순천대 평균을 따른다.

2. 취업지도

- 취업률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원업적평가기간에 정보공시한 가장 최근의 학과취업률
- 다음 표의 해당 점수를 학과 소속 교원 전원에게 부여

취업율	업적점수 (년)
80%이상	40
70% 이상 ~ 80%미만	38
60%이상 ~ 70%미만	36
50%이상 ~ 60%미만	34
40%이상 ~ 50%미만	32
40%미만	30

- 졸업생이 없는 학과의 취업률은 소속 단과대학의 평균취업률을, 소속 단과대학의 취업률이 없을 경우 대학 전체 평균취업률을 따름 (대학원 인채전자공학과는 순천대 평균 취업률)

3. 진로 및 학업 지도

- 강의시간외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대학 시스템에 등록
- 대학원 인채전자공학과는 순천대 평균으로 한다.

4. 대학원 지도

- 석·박사를 배출한 지도교수에게 해당 점수 부여
- 산학연계 석·박사 배출과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

5 학생대회 수상 지도

- 학생이 교외 경연대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시 지도교수에게 3점/수상팀
- 공동 수상시 3점/수상자수 부여, 공동 지도시 3점/지도자수 부여

[별표 5] (신설 2013.03.01, 2013.5.31.) (개정 2014. 04.29 2015. 2. 3, 2017. 8. 22.)

봉사업적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평가항목	구분	세부구분	업적점수	비고	
교내 봉사 활동	1행정	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회의장	200/년	* 학기별 상위 세부 구분 점수 중 한가지 선택 적용 (300점 초과불가) * 위원회위원은 임명 직위원으로 회의참석 1회당 4점 부여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교수회 부의장,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120/년		
		학부(과)장, 전공주임	80/년		
		공학교육인증 PD 교수, 교수회 사무처장 및 평의원, 위원회위원(총장발령)	40/년		
	학사지도	2신입생 유치활동		20/회	
		3교내 학술강연 및 교양강좌		10/회	
		4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	20/회	
			석사학위 논문	10/회	
		동아리 지도교수		40/년	40점 초과불가
	간접경비	5간접경비 수혜		2/5만원	500점 초과불가
교외 봉사 활동	학술단체활동	국제학회	회 장	300/년	
			부회장, 편집위원장	160/년	
			그 외 임원 및 편집위원	120/년	
		전국학회	회 장	200/년	
			부회장, 편집위원장	60/년	
			그 외 임원 및 편집위원	40/년	
	전국학회 지부(회)	회 장	60/년		
		부회장, 편집위원장	40/년		
		그 외 임원 및 편집위원	20/년		
	6공공기관 봉사활동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120/년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80/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40/년	
		국가 및 지방고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40/회	
		기타시험(공공관리)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20/회	
	7강연 및 특강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20/회	산업체·연구소· 관공서 특강 및 학회 초청강의 제외
	외부 논문 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		30/회	
		석사학위 논문심사		20/회	
		국제학회 논문 심사		30/회	
		국내학회 논문 심사		20/회	
	언론 및 홍보활동	방송출연	중앙방송	100/회	300점 초과불가
지역방송			40/회		
보도 및 칼럼게재		중앙지(정기간행물)	60/회		
		지방지(정기간행물)	30/회		
8예체능 심사위원	국제대회		60/회		
	국내대회		40/회		
각종사회 봉사활동	기부행위		1/1만원	100점 초과불가	
	임원		40/년		
	회원		20/년		

	봉사 및 학술활동 관련 수상	각종 봉사활동	5/회	
		저명한 국제기구, 저명한 국제학술단체	200/회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전국규모 학회	100/회	
		기초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전국규모 이하 학회	40/회	
발전 기금	본인가탁	기탁 총액을 5만원에 1점으로 산출	1/5만원	
	유치	유치 총액을 20만원에 1점으로 산출	1/20만원	

1. 각 대학원 전공주임 포함하며, 보직이 중복될 경우 상위점수 한가지만 인정
 2. 신입생 유치활동은 입시담당부서에서 경비를 지원받고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고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단과대학, 모집단위, 국책사업단 등의 유치활동 경우에도 사전에 입시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소정의 결과물을 입시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득한 것에 한함
 4. 지도교수는 해당되지 않음.
 5. 공동연구는 순천대학교에 간접경비가 입금된 경우에 한하며, 공동연구원인 순천대학교 교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산학연구지원과에 자료가 없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6. 공공기관 봉사활동은 기관장이 서면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한함(단, 겸직의 경우 상위직 하나만 인정)
- 위촉장, 임명장 등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활동기간을 1년으로 인정
 7. 특강은 순천대학교 교원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득해야함
[단, 소속학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제외]
 8. 연 1회에 한함
- ※ 봉사기간에 따른 업적점수 산출방법
- ① 업적점수 = 연간 업적점수 x (봉사 개월수/12)
 - ② 시작 또는 종료 달에 1일을 봉사했다라도 1달로 계산함
- 예) 교수회 평의원으로 9월 30일부터 익년 2월 1일 까지 봉사한 경우, 업적점수 = 40점 x (6개월/12) = 20점